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2.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8.02.09 ~ `18.05.15

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8.05.16 ~ `18.05.27

- 버스장착·기동(시민신고) : `18.04.02 ~ `18.05.15

나. 통보건수 : **조성봉 등 4,558명**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버스장착형)	시민 신고	서손 건수	제외사유
금회	5,042	4,558	4,157	311	90	484	-연속단속 -면제차량
전회 누계	76,646	55,577	53,247	1,885	445	21,069	-진입구간 짧음 -자납
누계	81,688	60,135	57,404	2,196	535	21,553	-기타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8.05.30 ~ `18.06.19(20일간)

- 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. 1부.
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8-06-22 10:17:02

